

[일련번호 : 6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지출증빙서류 미비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과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출예산을 편성·집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2조에는 물품 대가를 지급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,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,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83조에는 물품의 매입·수리·수선·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고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과는 2024. 12. 02. ***** 운용용품을 구매하면서 498천원에 대해서 물품검수조서 등의 증빙서류 없이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과는 물품검수조서 누락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